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5450242 판결 [이자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담당변호사 김용우, 노준철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2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회사(C 주식회사)의 채무

1) 원고는 2020. 11. 17. 주식회사 D(이하 '차주'라 한다), 시공사 E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F(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원고가 차주에게 대구 G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10%(연체이자율 연 13%), 대출기간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출하되, F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고, C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제5장 이자

제5-1조 (이자율)

본 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일십점영(10.0)%의 고정금리로 한다.

제5-2조(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① 차주는 제5-1조의 이자율 및 본 조 제2항의 이자기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를 매 이자지급일(본 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에 대주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연체이자)

① 차주가 이행기가 도래한 본건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본 약정에 따른 각종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차주는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 또는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제2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각 연체이자를 대주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체이자율은 제5-1조에 따른 약정 이자율에 연 삼점영(3.0)%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2) 원고는 2020. 11. 2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25억 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2022. 11. 28. 「대출만기일을 2023. 4. 30.까지로

연장하고, 이자지급일을 '매 이자기간 만료일'에서 '대출만기일인 2023. 4.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3) 차주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3. 11.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은 296,027,395원이다(이하 '이 사건 이자채무'라 한다).

나. 분할 전 회사의 물적 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의 미이행

1) C는 건설사업 부문 및 IT사업 부문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2022. 10. 31.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22. 12. 13. 물적 분할의 방식으로 피고를 신설하여 IT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피고에게 귀속시켰고, C는 존속회사로서 존속하며 그 외 나머지 사업부문을 목적 사업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하고, C는 분할 전후에 따라 '분할 전 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칭한다).

2) 이 사건 회사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C)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IT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피고)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로서 존속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4)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3. 분할 주요 일정

분할 이사회 결의일(분할계획서 작성일)	2022년 10월 1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22년 10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22년 11월 01.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2022년 12월 02.일
분할기일(예정일)	2022년 12월 09.일
분할보고 총회일 및 창립총회일(예정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2년 12월 12.일

3) 분할 전 회사는 2022. 11. 30. 원고에게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이의제출기간(2022. 11. 1. ~ 2022. 12. 2.)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 서면을 보냈다.

4) 이에 원고는 2022. 11. 30. 분할 전 회사에게 '분할신설회사(피고)가 이 사건 이자채무를 연대보증할 것, 연대보증이 불가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채권보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제출서를 보냈으나, 분할 전 회사는 아무런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분할절차를 진행하여 2022. 12. 13. 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존속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존속회사는 2023. 4. 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48)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르면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분할등기일로부터 14일 전에 원고에게 이의제출 최고를 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위반한 최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자채무에 대하여 존속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회사로부터 최고를 받은 즉시 같은 날인 2022. 11. 30. 이의를 제출하였음에도, 분할 전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채권자보호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물적 분할을 마쳤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존속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이 사건 이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이자채무 중 2023. 11. 30.까지 발생한 부분인 296,027,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의제출기간이 상법 규정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최고를 받은 후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이의제출 최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F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차주의 주주들(F 외 3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주채무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인 피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회사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충분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는 원고가 이의제출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절할 수 있고, 상법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이 규정한 이의 제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신탁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214 판결 참조).

2) 피고의 연대 변제 책임의 존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회사는 원고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출을 하였음에도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이 규정한 이의제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신탁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분할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신설회사인 피고와 분할 전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이자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충분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는 원고가 이의제출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절할 수 있고,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분할 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채무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023. 11. 3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296,02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근영